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4
----------	------

제출일자: 2020. 4. 16.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평소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을 통해 도움을 주며, 재난 상황 발생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평가 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수술료 감면은 제9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의 2(수수료 감면)</u></p> <p>① <u>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li> <li>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li> <li>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4. 그 밖에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li> </ol> <p>② <u>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에 따른 세입 감소

### 2. 비용추계의 전제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약 6개월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						
	구비	-518,400	0	0	0	0	-518,400
	소계(a)						
세출	시비						
	구비						
	소계(b)						
□총 비용(a-b)		-518,400	0	0	0	0	-518,400

### 4. 재원조달 방안

5. 작성자 : 안전환경국 청소과 황병구 (02-450-7636)

**1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